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332호 2018. 1. 31(수)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3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 3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사유

-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매월 일요일(둘째, 넷째 주)에도 운영되어 수영강사의 지속적인 강습과 근무로 인한 피로도 증가로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와 수영장의 격주 휴장으로 인한 수질관리 문제 및 공단 내 다른 수영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이용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함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명절(설·추석) 연휴』을 『일요일, 명절 (설·추석) 연휴 휴관』으로 일부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8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3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매주 일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사유

- 2018년 아시안게임에 인라인롤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타·시도 직장운동경기부(인라인롤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성별을 표시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감독점수산정기준표, 선수점수산정기준표, 등급별 연봉,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선전장려금, 입상자보상금 지급기준, 성과금 지급점수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
-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 별지 서식 기재사항 중 「성별」표시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8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
 등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생년월일	(남, 여)
------	--------

[별표 1]

감독 점수 산정 기준표 (제4조제4항 관련)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비고
올림픽대회	특급			36점	33점	30점	개인 및 단체
아시안게임	특급	36점	33점	30점	27점	24점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6점	33점	30점	27점	24점	21점	
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전국규모대회	15점	13점	11점	8점	6점	4점	
심의위원회 배점	1점 ~ 40점						

- 감독 점수는 선수들의(전직이나 현직에서 지도했던 선수) 경기실적을 점수산정 기준표에 의해 배점하여 합산한 점수의 60퍼센트를 적용한 점수와 심의위원이 배정한 평균 점수를 더한다.
- 감독 점수산정을 위한 선수들의 성적은 연봉을 적용 할 전년도 성적으로 평가한다.

[별표 2]

선수점수산정기준표 (제4조제4항 관련)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비고
올림픽대회	특급			60점	55점	50점	4년
아시안게임	특급	60점	55점	50점	45점	40점	4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60점	55점	50점	45점	40점	35점	2년
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25점	1년
전국규모대회	40점	35점	30점	20점	15점	10점	1년
감독 배정(근무태도 등)	1점 ~ 10점						
심의위원회 배정	1점 ~ 20점						

비고. 선수들의 경기 성적은 연봉을 적용 할 전년도 성적으로 평가한다.

[별표 4]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등급별 연봉(제9조제3항 관련)

(단위 : 천원)

직책	등급	연봉액		비고
		점수	보수액	
감독	1	500점 이상	60,000	
	2	400점 이상 ~ 500점 미만	58,000	
	3	300점 이상 ~ 400점 미만	56,000	
	4	200점 이상 ~ 300점 미만	53,000	
	5	100점 이상 ~ 200점 미만	50,000	
	6	90점 이상 ~ 100점 미만	47,000	
	7	80점 이상 ~ 90점 미만	44,000	
	8	70점 이상 ~ 80점 미만	39,000	
	9	60점 이상 ~ 70점 미만	34,000	
선수	1	○ 올림픽대회(4년) 3위 이내, 아시안게임(4년) 1위 입상 ○ 배점 합계 700점 이상	60,000	
	2	○ 세계선수권대회 1위, 아시안게임 2, 3위 입상 ○ 배점 합계 600점 이상	58,000~ 56,000	
	3	○ 세계선수권대회 2, 3위,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입상 ○ 전국체육대회 개인 1위 입상 ○ 배점 합계 500점 이상	56,000~ 54,000	
	4	○ 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 3위 이내 입상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 ○ 배점 합계 400점 이상	54,000~ 48,000	
	5	○ 전국규모대회 1위 입상 ○ 국가대표 선발 ○ 배점 합계 300점 이상	48,000~ 44,000	
	6	○ 배점 합계 200점 이상	4,400~ 4,000	
	7	○ 배점 합계 100점 이상 ~ 200점 미만	40,000~ 30,000	
	8	○ 배점 합계 40점 이상 ~ 100점 미만	30,000~ 26,000	
	9	○ 배점 합계 40점 이하	24,000	

1. 별표 1과 2에 의한 점수 적용

2. 감독 9등급 미만, 선수 9등급 미만인 경우는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

[별표 5]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제11조 관련)

(단위 : 천원)

급수	유치비 기준	최소계약 유지기간	지급액
1급	○ 올림픽(4년 이내), 아시안게임(4년 이내)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5년	50,000
2급	○ 2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개인부문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자	4년	40,000
3급	○ 현재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활약하고 있는 사람 ○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 입상 경력자	3년	30,000
4급	○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2위 입상 경력자	2년	20,000
5급	○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위 입상 경력자	2년	10,000

1.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 기준은 해당선수의 신규 입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가대표선수의 자격 기간은 대한인라인롤러연맹의 국가대표선수 선발지침을 준용한다.

[별표 6]

대회출전 선전 장려금 지급액(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올림픽대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	전국규모대회	비 고
금 액	선수 및 지도자당 500,000원	팀당 500,000원	팀당 300,000원	

[별표 7]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제12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지급기준					
입상	종목별		지급액 (단위 : 천원)			
			1 위	2 위	3 위	
	선수	올림픽대회		10,000	7,000	5,000
		아시안게임		7,000	5,000	3,00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000	2,000	1,000
		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		1,000	700	500
		전국규모대회		500	300	200

비고. 입상보상금 지급은 동일인이 단체분야와 개인분야로 지급하며, 각 분야에서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별표 8]

성과금지급점수 산정기준(제12조제3항 관련)

(단위 : 점)

구 분	1위	2위	3위	비고
올림픽대회	300	250	200	※ 동일인이 같은 대회의 단체 분야와 개인분야에서 각각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각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하여 점수 산정한다.
아시안게임	200	150	10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00	90	80	
전국체육대회 기타국제대회	80	70	60	
전국규모대회	30	20	10	

비고 각종 입상자의 신기록 수립 시 추가로 가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올림픽신기록 50점, 아시안게임신기록 40점, 세계신기록 30점, 아시아신기록 20점
한국신기록 10점, 대회신기록 5점)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 주 소 :

○ 종 목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성 별 :

위 사람은 인라인롤러 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 경기단체장 _____ (인)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계약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 이라 한다)는 (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선수)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의 증명을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상호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및 의무)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 라 한다) 발전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합의된 연봉을 지급할 의무를 갖고, 을은 갑의 규정을 준수하며 그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_____년 1월 1일부터 _____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기준연봉) 갑은 제2조의 계약기간에 을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일금 _____원(세금포함)을 기준연봉으로 하여 이 계약서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연봉의 조정) 갑은 이 계약에 의한 을의 이행 정도와 경기실적 결과에 따라 연봉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갑과 을은 연봉지급방법에 대하여 양자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방법 : 연봉액을 12회로 분할 지급한다.
2. 지급시기 :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근무일에 지급한다.

제6조(입상보상금) 갑이 을에게 출전을 요구한 대회의 경기종료 후 그 성적에 따라 갑은 을에게 입상자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갑은 규정과 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을로 하여금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갑에게 명예훼손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오지 않도록 독려할 권리가 있는 반면, 모든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 을의 이익보호와 을의 권리행사에 적극 협조한다.

② 을은 규정과 계약서상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 요구하는 경기 및 갑의 훈련을 포함한 모든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을은 갑의 의무이행 도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갑이 협약한 지정병원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을에게 수혜자격이 있다. 다만, 을과 갑의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건강을 해치는 어떠한 활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5. 을은 갑의 규정 및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훈련과 관련된 비밀이나 내부적 사항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지불의 한계) 을은 제3조 및 제6조에 명시된 것 이외의 보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사고 시 보수지급)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운동경기부활동이 불가능하였을 때 31일째 되는 날부터 훈련 및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1년을 기준으로 연봉의 330분의 1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상 등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활동경비의 부담) 갑은 계약에 명시된 연봉 외에 계약기간 동안 을이 갑을 위하여 전지훈련, 대회참가로 출장하는 경우의 활동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를 부담한다.

제11조(용기구) 갑은 훈련 또는 경기에 필요한 용기구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상해보험)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실시한 훈련 및 경기로 인한 상해(사망 포함)를 대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상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3조(건강진단) 을은 계약 체결 전 육체 및 정신적인 면에 대한 결함 유무를 증명하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 그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을의 계약위반)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계약 파기
2. 갑이 입은 피해액의 보상에 필요한 금액을 을에게 배상 요구

제15조(계약갱신) 선수계약 갱신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계약해지) 조례 제6조의 의무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르며, 분쟁 발생 시에는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른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할 경우 또는 감독, 소속선수 간 불화 등으로 인한 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더 이상 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팀 해체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갑”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인)

“을”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성 별 :
 주 소 :

[별지 제6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부 명	성명(한자)		생년월일		(남, 여)								
성 명 (한 글)	본관		성별	주소	생활근거지		등록기준지						
				주소2									
병 력 관 계	해당 없음	미 필			복 무								
		역종	체격등위	미필사유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영년월일	전역년월일	MOS	
	개 인 신 상 관 계	신체 사항	신 장	체 중	시력		색 명		혈액형	간상태	종 교	취 미	특기
		재산 사항	동 산		부 동 산		가 옥		부 업 명	부업일수	재 산 총 액		
		정당 사회 단체	단 체 명		직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단 체 명	직 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가 족 사 향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직장·직위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직장·직위	
학 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과목		학위	기 간		학교명 및 전공과목		학위			
전 력	기 간		근무처		직위	기 간		근무처		직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 면 사 항	임용년월일	직 위		확 인	퇴직년월일	직위		확 인		
연 봉	년월일	연봉	근무일수	확 인	년월일	연봉	근무일수	확 인		
이 면 후 경 기 실 적	기간	대회명		장소	전적	기간	대회명		장소	전적
이 면 후 경 기 실 적	기간	대회명		장소	전적	기간	대회명		장소	전적

[별지 제12호서식]

퇴 직 급 여 청 구 서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퇴 직 년 월 일	
퇴직당시 소속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여자 인라인롤러부)	퇴직당시직명	

첨 부 : 사직서 1부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재직기간 :

소 속	직 명	근 무 기 간	발 령 청	확인(업무담당)
		. . . ~ . . . (총근무일수 :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 지급금액 : 금 원정(금 원)

○ 퇴직전 : 원

○ 퇴직금 : 원

○ 퇴직금

월평균 보수

산출액

전환금 : 원

납부액